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및
지급 결정 절차 정비〉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298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21인

(2) 제 안 일 : 2026. 4. 13.

(3) 회 부 일 : 2026. 4.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었고, 생계급여·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보다 낮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 (입법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의무 지급 중임.

현행법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권

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및 소득·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개선함(안 제10조의2 제4항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조사·지급결정 및 금융정보 제공 등의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및 제10조의2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② (생략) <u><신설></u>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u>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u>③ (생략)</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u>	<u>⑤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장애인</u>

금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
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생략)

<신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

연금 신청, 제3항에 따른 신청 간주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

--- 신청(제8조제3항 및 제10조의2
제4항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8조제3항 또는 제10조
의제2제4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3
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때
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생
략할 수 있다.

③ -----
----- 제1항 및

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수급 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제2항의 통지는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2. (생략)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 ① ~ ③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2항-----

-----.

④ -----
제3항-----

-----.

⑤ -----
----- 제4항-----

--. -----
-----.

1. 2.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그 사람에 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있는 날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 -----

----- 제8조제4항·제5항-----

-----.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의 시기 및 제4항에 따른 <u>안내</u>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u>제8조제3항</u>(제1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⑥ ----- ----- ----- <u>신청 간주의</u> ----- ----- -----.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 ----- ----- ----- <u>제8조제4항</u> ----- ----- ----- ----- ----- ----- ----- -----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한 소득 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¹⁾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음(참고자료 1: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장애인연금 급여액(2026년)>

(단위: 원)

구분	18~64세 ^{주1)}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349,700원	90,000원	439,700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439,700원 ^{주2)}	439,7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349,700원		- ^{주3)}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80,000원	429,700원		80,000원 ^{주4)}	80,000원
차상위 초과		30,000원	379,700원		50,000원	50,000원

- 주1)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선정기준액 초과분은 감액하고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는 20%를 감액함)
주2)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주3) 단,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는 특례가 적용되어 80,000원 지급
주4) 단,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 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는 특례가 적용되어 150,000원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 현행법상 장애인연금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조사와 제10조에 따른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제10조의2에 따른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1)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급 ~ 6급 장애등급 중 1급이나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임.

「장애인연금법」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
3.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의 시기 및 제4항에 따른 안내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장애인연금의 신속한 지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첫째, 생계·의료급여의 2026년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82만 556원, 의료급여 102만 5,695원이고 2인 가구 기준으로는 각각 134만 3,773원 및 167만 9,717원²⁾인 반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224만원³⁾으로,

생계·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이미 선정된 사람은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경우도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5. 8. 1., 제정.]

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 8.]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6-3호, 2026. 1. 8.,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둘째,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장애인연금 신청 당시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장래에 수급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계속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대상자에게는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발생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도 지연될 수 있음.

□ 셋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가 선행되어 있다는 점에서,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

이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다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중복으로 발생하여 불필요한 유·무형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 부칙 제3조의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 조문과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의 실질적인 적용 대상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이므로,

적용 대상 조문을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이 아니라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 부칙 제3조의 문언에 따르면, 법 시행 전에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시행 이후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사람은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수급 형평성 측면에서 법 시행 전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생략.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연금의 신청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10조의2제2항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 개정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02

5)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 연혁

- 중증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으로 개편('10.7.1.)
 - 「장애인연금법」 제정('10.7.), 경증장애수당은 유지
 - 장애인연금 신청자 대상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재심사 실시('10.7.1.)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14.7.1.)
 - 「장애인연금법」 개정('14.5.)
 - ※ (기초급여액) 99,100원 → 20만 원, (대상자) 소득 하위 63% → 소득 하위 70%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장애인연금법」 개정('18.3.)
 - ※ (기초급여액) 20만 원 → 25만 원('18.9.)
 - 소득수준별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①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 ③ 전체 수급자 ('21.1.)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22.1~)

☐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 (선정기준액) '26년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
 -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제4조제2항)

☐ 수급자 : 34만 7,898명(수급률 70%, '25.12월 기준)

☐ 예산 : 국비 907,129백만원(서울 50%, 지방 70% 보조)

자료: 보건복지부